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 대표이사

(참조)

제 목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서울시 조례 공포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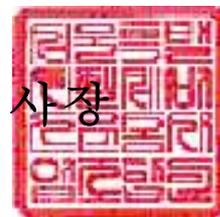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 조례 제8705호(2023.05.22)와 관련입니다

2. 우리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(재정지원)와 관련하여 서울 전세버스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불임과 같이 서울시 조례가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불임 :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 
(서울특별시조례 제8705호)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과 장 박영수	부 장 라영석	실 장 (전결)	박호동	이사장
시행 서전버조 23-112호	( 2023.05.25 )	접수		( 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	올림픽로 319(교통회관 11층)		/ http://www.tourbus.or.kr	
전화 02-422-0019	전송 02-418-0071	/		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